

대구고등법원 2023. 3. 28 선고 2021나28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3. 28 선고 2021나2823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2089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정오건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손준수, 윤여현

변론종결 2023. 2. 28.

판결선고 2023. 3. 2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2089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7.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②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가 E의 아들인 점, 대여 당시 원고의 나이가 30살 정도인데 대여금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원고의 E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E에 대여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정확하게는 허위의 채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정확하게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C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가 C를 상대로 신청한 전부금 지급명령이 각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C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E의 1인회사 또는 E의 가족회사인 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정확하게는 허위의 채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정확하게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인 점(2015. 7.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7. 1. 퇴임하였고,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G이 이 법원에서 ‘H이 C의 주식 중 34%를 보유하고 있었고, C의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C를 E의 1인회사 또는 E의 가족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 I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당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비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금액인 5억 원(= 500,000원/주 × 1,000주)은 지나치게 저가로 매수한 것이다.

②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D이 소유한 토지의 시가는 155,179,906,600원, 건물의 시가는 6,923,435,380원, 합계 162,103,341,98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③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0,948,852,000원(= 10,948,852원/주 × 1,000주)라고 감정하였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D은 부동산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1)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산정된 금액이다. 즉, D의 자산총계 183,446,472,803원에서 부채총계 52,060,246,169원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131,386,226,634원(= 183,446,472,803원 - 52,060,246,169원)을 발행주식 총수 12,000주로 나눈 금액인 10,948,852원(= 131,386,226,634원 ÷ 12,000주)을 주당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감정 과정에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갑 제3호증(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J)는 최종적으로 2003. 11. 5. 이 사건 주식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C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무렵 지급한 돈은 41억 원인 사실2)이 인정된다(갑 제3호증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고,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놓고 비교하더라도 C가 2003. 11. 5.경 위와 같이 지급하고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 위 매수 시기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2018. 9. 7.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한 것은 지나치게 저가에 매도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⑤ G의 증언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H은 2022. 11.경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이래 이 법원에서 G이 증언하기 전까지는 주식 매매대금으로 5억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G 증언 후 C 측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인들 등에 대한 소개비, 수고비,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23. 2. 22.자 준비서면 제5, 6면). 그러나 매매대금 5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소개비만으로 보기에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 주장대로 위 1억 원에 수고비, 사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고가 저가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데 대한 수고비, 사례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이승엽, 판사 이기웅

별지

1)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 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04. 1.경 명의개서 신청을 하면서 1주당 매매대금이 100,000원, 매매총액 1억 원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세금 등의 문제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